

의안 번호	1610	【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4. 1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4. 14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4. 23.(목)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행안부 훈령 제130호, 2020. 5. 1. 시행) 개정으로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변경 전 제명을 변경 후 제명으로 조문 변경(안 제1조~제13조)
 -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개정으로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